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30일, 이학영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10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학영의원)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

단지 구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현행법은 ‘하·폐수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로 정의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부속시설, 공

급관로(管路)로 규정하면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자만이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폐수처리수는 2024년 기준 재이용시설 652개소에서 1,168,627천
m³가 재이용(재이용률 15.6%)되고 있는데,

최근 기후위기로 극한가뭄 및 지역별 강수 양극화 등으로 지역별
물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하수 재이용은 지자체(공공
하수도관리청)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관할 지역 외 시설로
의 재처리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이용시설 설치·운영과 광역 간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통하여
물부족 지역에 대한 재이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적 물재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관할 지역 외로의 재처리수 공급 요청에 대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규
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상 ‘하수도’ 업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물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관련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로 하여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의 재처리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데, 구체적인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광역 공급망 구축을 전제로 할 경우 시설용량, 관로 길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다른 수준의 요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금산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질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개정안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 이와 같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아울러 제재 수준에 있어서도 기존 하·폐수재이용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제재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